

【별표 1】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

비목	세목	계상 및 집행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
직 접 비	인 건 비	1. 사용용도 ○ 내부인건비: 우리 대학(학과, 연구소 등)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(4대보험 가입자)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○ 외부인건비: 관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※ 타 기관 소속 연구원(4대보험 직장가입자),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,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등 2. 계상·집행기준 ○ 산출방법: 월지급액 × 참여율 × 참여개월 수(=인건비 총액) ○ 월지급액은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참여율 100%를 기준으로 산출하고, 고용계약서 체결 시에는 기관 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실지급액만 명시. ○ 원 소속기관(대학, 국가/지자체, 기업 등)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급 받거나, 지원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 참여 연구원의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없음. ※ 미지급 또는 현물로 계상 ○ 인건비 지급액 산정 기준(월 인건비) - 미지급 또는 현물 인건비 산정 기준 (단위: 천원) <table><tr><td>교수</td><td>부교수</td><td>조교수</td></tr><tr><td>8,000</td><td>7,000</td><td>5,500</td></tr></table> ※ 실지급액을 기준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 적용 - 지급 인건비 산정 기준(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제외) (단위: 천원) <table><tr><th>직위 구분</th><th>동등경력 인정사항(택일)</th><th>월 상한액</th></tr><tr><td>책임연구원급</td><td> ○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○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 경력 소유자 ○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또는 자격 소유자 </td><td>6,000</td></tr><tr><td>선임연구원급</td><td> ○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○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○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또는 자격 소유자 </td><td>5,000</td></tr><tr><td>주임연구원급</td><td> ○ 박사과정 재학생 ○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소유자 ○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○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</td><td>2,500</td></tr><tr><td>연구원급</td><td> ○ 석사과정 재학생 ○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(시간선택제 근로자) </td><td>1,800</td></tr><tr><td>연구보조원급</td><td> ○ 학사과정 재학생 ○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(시간선택제 근로자) </td><td>1,000</td></tr></table> ※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무조건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며, 성과급(연구수당) 및 제수당(명절수당, 연가보상비 등)은 별도 지급 가능함. ◎ 부당집행 기준 * 원 소속기관(대학, 국가/지자체, 기업 등)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급 받는 연구원에게 지급한인건비	교수	부교수	조교수	8,000	7,000	5,500	직위 구분	동등경력 인정사항(택일)	월 상한액	책임연구원급	○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○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 경력 소유자 ○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또는 자격 소유자	6,000	선임연구원급	○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○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○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또는 자격 소유자	5,000	주임연구원급	○ 박사과정 재학생 ○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소유자 ○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○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	2,500	연구원급	○ 석사과정 재학생 ○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(시간선택제 근로자)	1,800	연구보조원급	○ 학사과정 재학생 ○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(시간선택제 근로자)	1,000
		교수	부교수	조교수																						
8,000	7,000	5,500																								
직위 구분	동등경력 인정사항(택일)	월 상한액																								
책임연구원급	○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○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 경력 소유자 ○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또는 자격 소유자	6,000																								
선임연구원급	○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○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○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또는 자격 소유자	5,000																								
주임연구원급	○ 박사과정 재학생 ○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소유자 ○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○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	2,500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원급	○ 석사과정 재학생 ○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(시간선택제 근로자)	1,800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보조원급	○ 학사과정 재학생 ○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(시간선택제 근로자)	1,000																								